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000-000743-01

한 · 콜롬비아 FTA 상세설명자료

2012. 12

관계부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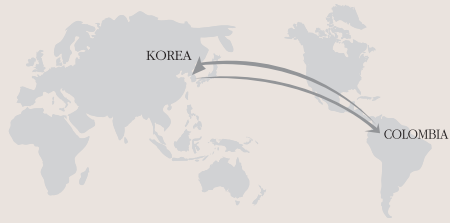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OLOMBIA



※ 동 설명자료는 한·콜롬비아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정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으며 자료상의 용어는 협정상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Contents · 목 차

1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7
2	상 품	9
3	원산지 규정	31
4	원산지 절차	41
5	관세 행정 및 무역원활화	44
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48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50
8	무역구제	54
9	투 자	57
10	국경간 서비스 무역	71
11	서비스/투자 통합 유보	76
12	기업인의 일시입국	84



13	통 신	89
14	전자상거래	94
15	경쟁 및 소비자정책	96
16	정부조달	100
17	지식재산권	106
18	지속가능발전	111
19	협 력	116
20	투명성	120
21	협정의 운영	121
22	분쟁 해결	123
23	예 외	128
24	최종조항	130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 서문 주요 내용

- ▣ 양국간 우호 및 협력 관계 강화, 자유무역지대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을 확신, 경제적 발전 기회 창출의 중요성 고려,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무역 장벽의 제거 및 새로운 장벽의 회피 결의,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한 협정 이행 등

◇ 최초규정 및 정의

- ▣ 최초규정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과 여타 협정과의 관계를 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

-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협정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불일치의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이 우선

▣ 정의 조항에서는 협정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정부, 관세, 기업, 조치, 국민, 영역 및 기타 원용된 각종 협정의 정의를 규정

■ 국민(national)

- 한 국 : 국적법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 콜롬비아 : 콜롬비아 헌법 제96조에 따라, 출생 혹은 귀화에 의한 콜롬비아인

■ 영역(territory)

- 한 국 :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콜롬비아 : 대륙 또는 섬으로 된 콜롬비아의 영토, 콜롬비아의 상공과 해양 및 해저, 그리고 콜롬비아가 그 헌법, 콜롬비아의 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그 밖의 요소

상 품

◆ 개 요

- ▣ 관세의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 ▣ 양자세이프가드 이외에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

◆ 상품 협정문

1. 관세 철폐 [제23조]

- ▣ 부속서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인하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
 - 일방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여

2.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예외 (제2.2조, 제2.8조부속서 2.2)

□ 콜롬비아의 일부 품목 관련 조치*는 내국민대우(제2.2조) 및 수출입제한금지(제2.8조)의 예외 적용

※ 커피수출통제조치, 주류에 대한 과세조치(2013. 8.1 까지), 중고품수입관련조치

※ 동 사항은 콜-미 FTA, 콜-EU-페루 FTA 등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에서도 모두 반영

- 단, 중고품 수입관련 조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10년후 재검토

3. 일시반입상품에 대한 면세 (제2.5조)

□ 양국은 원산지과 관계없이 일부상품에 대해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 일시반입 대상 물품

-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 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4.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 (제2.6조)

□ 양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의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무관

5. 콜롬비아의 관세인하조치 영향품목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 [부속서 2-가]

▣ 콜측은 콜롬비아 관세양허표에 따라 산정된 FTA세율이 협정 발효시의 콜측 실행 MFN(최혜국)세율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 ‘FTA세율 > MFN세율’ 기간 동안 특혜세율(= MFN세율 - 0.5%p) 적용 (콜롬비아 관세양허표 일반주해 제4조)

■ 특혜세율 적용 방식 (2012.8.13 MFN세율 기준 적용시)

- 특혜세율 산정 : 2012.8.13 MFN세율 - 0.5%p
- 대상 품목 : 1년에서 최대 4년간 FTA 특혜이익을 상실하는
총 2,232개 비농산물 품목 (콜롬비아 관세양허표
‘비고’란에 기간별로 a~d로 별도 표기)
- 1년(a) 734개 / 2년(b) 1,244개 / 3년(c) 253개 / 4년(d) 1개

※ 평판압연제품(7210120000) 사례 : 기준세율 10%, 5년 관세철폐 양허
- 관세감축 스케줄 : (발효1년) 8% → (발효2년) 6% → (발효3년) 4% →
(발효4년) 2% → (발효5년) 무관세
- MFN 세율이 10% → 5%로 인하되어 발효 2년차까지 특혜이익을 상실하
는바, 동 기간 동안 4.5%(= 5% - 0.5%)의 특혜세율 적용

콜롬비아 관세인하조치 경과 및 협상 결과

○ 콜롬비아 관세인하조치 경과

- '09.12월 한·콜 FTA 협상개시 당시 기준세율을 '10.1.1 MFN으로 설정하였으나, 콜측은 '10.11월 대대적인 MFN 관세 인하조치를 단행한 이후 일련의 관세 조정조치를 지속(동 조정은 2012.8.13 완료 예정)
- 콜측의 관세인하 조치로 인해 한·콜 FTA가 발효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FTA 세율 > MFN 세율'로 인해 FTA 특혜이익이 상실되는 문제 발생

○ 협상 결과

- (농산물) 기준세율을 기존 2010.1.1 MFN → 2012.8.13 MFN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산물의 FTA 특혜이익 상실문제 해결
 - ☞ 단, 콜·미 FTA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래 MFN 원칙이 적용되는 바, 민감 농산물 58개 세번은 변경(인하)전 기준세율인 2010.1.1 MFN 적용
- (비농산물) FTA 특혜이익을 상실하는 품목에 대해 'FTA 세율 > MFN 세율' 기간 동안 0.5%p의 특혜마진 제공

- 아울러, 협정 발효 전에 콜측이 2012.8.13 MFN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FTA세율 > 추가 인하된 MFN세율'인 품목에 대해 동 기간 동안 0.5%포인트의 특혜마진 제공 의무

※ 우리에 앞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미국('12.5.15 발효)·EU('12년 하반기 발효 예정)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MFN 관세인하조치에 따른 특혜이익 상실에 대한 별도 보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6.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2.13조 및 부속서 2-나

- 쇠고기 정육, 만다린 등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 설정된 물량(trigger level)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Agricultural Safeguard) 적용 가능

※ ASG 발동 가능 품목

- 우리측 : 쇠고기 정육(2개 세번), 만다린(1 개 세번)
- 콜 측 : 쇠고기 정육(2개 세번)

- 단,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인상되는 관세율은 최혜국(MFN) 실행세율 초과 불가

-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한·콜롬비아 FTA에 의한 양자 세이프가드, 또는 WTO 협정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는 동시 적용 또는 유지 불가

7.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제2.16조)

-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 상품(제2장) 및 무역구제(제7장) 챕터관련 사항 검토를 위해 위원회 개최

- 농산물 무역 임시작업반 설치

- 농산물 무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시 개최하고,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

◆ 상품양허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한·콜롬비아 교역(2011년) : 19.9억불 (수출 16.1억불, 수입 3.8억불, 무역수지 12.3억불)

▣ 양측은 현재 교역중인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 (우리) 96.1%, (콜측) 96.7% /
수입액 기준 : (우리) 99.9%, (콜측) 97.8%

〈 한·콜롬비아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개, USD)

양허단계	우리 양허				콜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0	9,787	82.38%	85,786,333	66.91%	4,390	60.64%	283,528,285	34.08%
무관세	1,932	16.26%	36,228,073	28.25%	265	3.66%	31,154,076	3.74%
3	268	2.26%	3,824,842	2.98%	33	0.46%	1,404,047	0.17%
5	670	5.64%	37,279,881	29.08%	1,547	21.35%	176,340,146	21.20%
5년 소계	10,725	90.27%	126,891,057	98.96%	5,970	82.46%	461,272,479	55.45%
7	136	1.14%	1,273,064	0.99%	503	6.95%	37,320,436	4.49%
9					1	0.01%	41,192,955	4.95%
10	558	4.70%	25,267	0.02%	529	7.32%	273,812,794	32.91%
10년 소계	11,419	96.11%	128,189,388	99.98%	7,003	96.73%	813,598,664	97.80%
10년 초과	304	2.56%	22,555	0.02%	184	2.54%	18,288,563	2.20%
TRQ	5	0.04%	0	0.00%	6	0.08%	0	0.00%
양허제외	153	1.29%	6,259	0.00%	47	0.65%	0	0.00%
계	11,881	100.00%	128,218,202	100.00%	7,240	100.00%	831,887,227	10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0 10단위 기준, (콜롬비아) HTSC 2007 10단위 기준(단, 농산물은 8단위)

** 수입액 : 2007~2009 3개년 평균

***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은 별도 표시 없이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 형태를 가지는 양국간 교역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평가

※ 2011년 기준 한·콜 주요 교역 품목(금액, 전체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수출) 승용차(4.6억불, 28.6%), 車부품(3.7억불, 22.8%), 합성수지(1.0억불, 6.4%), 화물차(0.6억불, 4.0%), 타이어(0.4억불, 2.7%)
 - (수입) 커피(1.1억불, 29.9%), 원유(0.7억불, 19.7%), 합금철(0.6억불, 15.5%) 등

-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에 앞서 콜롬비아 시장을 선점하고, 한·칠레/한·페루 FTA에 이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아울러, 자동차·자동차부품·타이어·가전제품·섬유 등 우리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미국, EU 등) 수준의 양허를 확보함으로써 콜롬비아 시장내 경쟁력 유지

※ 우리 최대 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콜롬비아측 양허 비교
 - (한·콜 FTA) 10년철폐(단, 디젤중형4x4는 9년철폐) / (콜·미 FTA) 10년철폐, (콜·EU FTA) 7년철폐

- 우리 민감 농·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최대한 확보

- 양허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 우리는 쌀을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 한·콜롬비아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커피원두, 볶은커피, 철광, 동/알루미늄/아연 과 및 제품, 금, 은, 비금속광물, 흑연, 석탄, 윤활유, 정밀 화학원료,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타이머,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섬유사, 직물류, 의류(모피, 양복, 언더셔츠 등), 판유리, 손목 시계, 완구류 등	9,787	즉시 철폐	4,390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도금강판, 전자레인지,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방열기), 정밀 화학원료, 기타고무제품, 직물류(직물, 편직물 등),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전동기, 변압기, 밸브, 베어링, 커피,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커피조제품, 연어, 밀, 코코아 조제품, 원유, 자동차부품 등	268	3년 철폐	33	카네이션, 기타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등
페로니켈, 우황, 열대어, 어육, 장미, 국화, 백합, 마니옥, 바나나, 아보카도, 효모류, 병과류, 위스키, 제재목, 단판 등	670	5년 철폐	1,547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컬러TV, 에어컨, 의류,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섬 필라멘트사 등), 장미, 국화, 바나나 등
	10,725	5년 철폐 소계	5,970	
참다랑어, 골뱅이, 뱀장어, 기타절화, 파인애플, 망고, 수박, 두리언, 과일주스, 스위트, 남성바지 등	136	7년 철폐	503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폴리에스터 직물, 화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이어, 기타 화초, 딸기, 당근 등
-	-	9년 철폐	1	중형 디젤 중형 승용차(4x4)
냉동감자, 돼지고기, 양고기, 오징어, 요구르트, 조란, 건조 포도, 멜론, 살구, 자두, 옥수수, 소시지, 소스류, 잎담배, 제조담배, 니켈괴, 합판, 건축용 목제품 등	558	10년 철폐	529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일부 세탁기, 브라운관 TV,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신발, 완구류, 두류, 감, 과일주스 등
	11,419	10년 철폐 소계	7,003	
-	-	10년 철폐(APB)	15	돼지고기, 소시지, 사료 등
닭고기, 오리고기, 표고버섯, 감, 조제저장 송로, 파티클 보드, 섬유판, 일부 합판	29	12년 철폐	18	냉동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사료용첨가제,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등

우리 양허		양허단계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난황, 계란	4	12년 철폐(2년 유예)	-	-
냉동 닭가슴, 냉동 닭날개	2	13년 철폐	-	-
간조 표고버섯, 플터담배 등	4	15년 철폐	35	요구르트, 콩, 사탕수수당, 잎담배 등
-	-	15년 철폐(APB)	70	사료, 옥수수가루, 참기름, 돈지 등
닭고기(다리, 날개, 가슴), 치즈, 복숭아, 단감, 딸기, 생강, 꿀 등	256	16년 철폐	38	버터, 치즈, 과일주스, 인조꿀, 만다린 등
냉동자,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2	16년 철폐(2년 유예)	-	-
신선 포도	1	16년 철폐(계절관세)	-	-
만다린	1	16년 철폐(ASG)	-	-
-	-	18년 철폐	1	미절단 닭고기(냉동)
-	-	18년 철폐(5년 유예)	2	닭고기 절단육 및 설육(신선, 냉장, 냉동)
소 식용설육	3	19년 철폐	1	소 식용설육
정육	2	19년 철폐(ASG)	2	정육
-	-	20년 철폐(APB)	2	미절단 닭고기(신선, 냉장) 등
탈·전지분유	5	TRQ	6	탈·전지 분유
쇠고기, 밀크·크림, 연유, 감자, 마늘, 양파, 고추, 오렌지, 감귤, 사과, 배, 인삼류, 냉동 명태, 냉동민어 등	137	양허제외	42	쌀, 쇠고기, 우유, 분유, 고추, 마늘, 양파, 녹두, 팥, 오렌지, 감귤류, 장당 등
쌀 및 쌀 관련 품목	16	양허제외(APB)	5	밀크·크림, 버터, 전분, 사탕수수
		협정제외	-	-
	11,881	총합계	7,240	-

* APB : 콜측 안데안가격밴드 적용유지 품목. 고정관세만 관세철폐기간에 걸쳐 균등 철폐(변동관세는 유지)

* ASG : 농산물 셰이프가드 설정 품목

* 유예 : 관세철폐기간 초기 해당 유예기간 동안 관세철폐 의무 배제(잔여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 양허제외 : 양허표상 기준세율 유지

* 협정제외 : FTA 협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품목.(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 양측은 현재 교역중인 사실상 모든 공산품 및 임산물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 (우리) 99.8%, (콜측) 99.8% /
수입액 기준 : (우리) 100%, (콜측) 97.8%

〈 한·콜롬비아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개, USD, 07-09 평균)

양허단계	우리 양허				콜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0	9,500	95.66%	43,541,690	53.98%	3,849	62.79%	283,377,954	34.07%
3	146	1.47%	1,379,100	1.71%	31	0.51%	1,404,047	0.17%
5	132	1.33%	34,591,122	42.88%	1,420	23.16%	176,336,379	21.20%
5년 소계	9,778	98.46%	79,511,912	98.57%	5,300	86.46%	461,118,381	55.44%
7	6	0.06%	1,150,822	1.43%	455	7.42%	37,320,436	4.49%
9					1	0.02%	41,192,955	4.95%
10	127	1.28%	2,335	0.00%	363	5.92%	273,807,687	32.92%
10년 소계	9,911	99.80%	80,665,069	100.00%	6,119	99.82%	813,439,459	97.80%
12	20	0.20%	0	0.00%	11	0.18%	18,288,563	2.20%
총합계	9,931	100.00%	80,665,069	100.00%	6,130	100.00%	831,728,022	100.00%

* 우리 12년 관세철폐 : 섬유관, 합판, 파티클보드 등 임산물

* 콜측 12년 관세철폐 : 냉장·냉방기 9개, 세탁기 1개, 자동차부품 1개

- 양국간 공산품 교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절대적 경쟁우위를 감안하여 우리측의 관세철폐 기간이 다소 빠르도록 합의하였으나, 우리의 대콜 공산품 수입은 자원 광물(석유, 유연탄, 아연광, 동광, 알루미늄광 등)에 집중되어 있고 여타 공산품도 콜롬비아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콜롬비아 FT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효과는 제한적

※ 2011년 對콜 공산품(임산물 포함) 교역액 : (수출) 16.1억불, (수입) 2.6억불
 ※ 공산품(임산물 포함) 즉시철폐 비중 : (품목수 기준) 우리 95.6%, 콜측 62.7% / (수입액 기준) 우리 53.9%, 콜측 34.0%

- 콜롬비아는 우리의 대콜롬비아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콜롬비아 관세율 35%) 전체 품목(2007-2009 평균 대콜 수출 2억6천 8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 콜롬비아 기체결 FTA에서 승용차 양허
 - (한·콜 FTA) 10년철폐(단, 디젤중형 4×4는 9년철폐) / (콜·미 FTA) 10년철폐(단, 가솔린 대형 4×4는 즉시철폐), (콜·EU FTA) 7년철폐

- 특히, 향후 콜롬비아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중형 디젤 승용차 (1,500-2500cc, 4×4)에 대해서는 9년내 관세철폐

※ 콜측은 10인 이상 수송차량, 화물자동차, 특수용도 차량 등 여타 자동차에 대해서는 즉시~10년내 관세철폐

- 아울러, 우리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한 콜롬비아측 고관세 (약 15~20%)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대콜롬비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은 즉시~5년내 관세철폐, 타이어 (관세율 15%)는 5년내 관세철폐, 섬유류(관세율 15~20%)는 즉시~7년내 관세철폐, 가전제품은 5년~12년내 관세철폐

〈 한·콜롬비아 FTA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 위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평균)	양허 (년)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평균)	콜 출 양 허 (년)
1	페로니켈	3	34,431	5	가솔린 중형 (1500cc~ 3000cc) 승용차(기타)	35	79,127	10
2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25,473	0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	63,535	0
3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6,877	0	가솔린 소형 (1000cc~ 1500cc) 승용차(기타)	35	47,509	10
4	살균제 (농약원제의 것)	2	2,856	0	디젤 중형 (1500cc~ 2500cc) 승용차(4×4)	35	41,193	9
5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기타)	0	1,959	0	가솔린 중형 (1500cc~ 3000cc) 승용차(4×4)	35	35,941	10
6	풍선·완구용공·연 및 이와 유사한 것	8	1,384	0	가솔린 경차 (1000cc 이하)	35	28,523	10
7	폴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5	896	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이상 인 것에 한한다)	5	24,113	0
8	의약품 (기타)	8	767	3	가솔린 대형(3000cc 초과 승용차(4×4)	35	17,155	10
9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0	730	0	도데실벤젠	5	16,329	0
1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718	0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아산화티 타늄이 첨가된 것)	0	14,714	0
(10대 수입 소계)			76,091		(10대 수출 소계)		368,140	
공산품 수입 합계			80,665		공산품 수출 합계		831,728	

〈 한 · 콜롬비아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양허유형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철광, 동/알루미늄/아연 괴 및 제품, 금, 은, 비금속광물, 흑연, 석탄, 윤활유, 정밀화학 원료,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타이어,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섬유사, 직물류, 의류(모피, 양복, 언더셔츠, 속옷, 코트 등), 양말, 신발, 모자, 판유리, 손목시계, 완구류	9,500	즉시 철폐	3,849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도금강판, 전자레인지, 자동차부품(기어 박스, 방열기), 정밀화학원료, 기타교무제품, 직물류(재봉직물, 편직물 등),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전동기, 변압기, 밸브, 베어링
원유, 자동차 부품	146	3년 철폐	31	기타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페로니켈, 장신구, 제재목, 단판	132	5년 철폐	1,420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컬러TV, 에어컨, 의류,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섬필라멘트사 등), 판유리, 아연도강판
스웨터, 남성바지	6	7년 철폐	455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폴리에스터 직물, 화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이어
-	-	9년 철폐	1	중형 디젤 승용차(4×4)
니켈괴, 합판, 건축용 목제품	127	10년 철폐	363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일부 세탁기, 브라운관 TV, 조명기기,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신발, 완구류
파티클보드, 섬유판, 일부 합판	20	12년 철폐	11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2. 농산물

■ 수입액 기준 현재 교역중인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 (우리) 77.3%, (콜측) 79.6% /

수입액 기준 : (우리) 99.9%, (콜측) 100%

〈 한·콜롬비아 FTA 농산물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개, USD, 07-09 평균)

양허단계	우리 양허				콜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0	244	16.21%	42,244,643	89.42%	517	54.77%	150,321	95.16%
3	55	3.65%	2,445,739	5.18%	2	0.21%	0	0.00%
5	418	27.77%	2,379,745	5.04%	73	7.73%	3,767	2.38%
5년 소계	717	47.64%	47,070,127	99.63%	591	62.71%	154,088	97.55%
7	54	3.59%	122,241	0.26%	11	1.17%	0	0.00%
10	297	19.73%	22,933	0.05%	115	12.29%	3,873	2.45%
10년 소계	1,068	70.96%	47,215,300	99.94%	718	76.06%	157,960	100.00%
10(APB)					15	1.59%	0	0.00%
12	9	0.60%	0	0.00%	7	0.74%	0	0.00%
12(2)	4	0.27%	0	0.00%				
13	2	0.13%	0	0.00%				
15	4	0.27%	0	0.00%	35	3.71%	0	0.00%
15(APB)					70	7.42%	0	0.00%
16	253	16.81%	22,555	0.05%	38	4.03%	0	0.00%
16(2)	2	0.13%	0	0.00%				
16+S(5)	1	0.07%	0	0.00%				
16ASG(20)	1	0.07%	0	0.00%				
18					1	0.11%	0	0.00%
18(5)					2	0.21%	0	0.00%

양허단계	우리 양허				콜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19	3	0.20%	0	0.00%	1	0.11%	0	0.00%
19(ASG)	2	0.13%	0	0.00%	2	0.21%	0	0.00%
20(APB)					2	0.21%	0	0.00%
양허제외	151	10.03%	6,259	0.01%	42	4.45%	0	0.00%
양허제외(AFB)					5	0.53%	0	0.00%
TRQ	5	0.33%	0	0.00%	6	0.64%	0	0.00%
총합계	1,505	100.00%	47,244,114	100.00%	944	100.00%	157,960	100.00%

【우리 농산물 양허】

▣ 우리는 대콜롬비아 농산물 양허에 있어 전반적으로 한·페루 FTA보다 보호 수준을 강화

※ 즉시철폐 비율 : 품목수 기준 16.2%(한·페루 FTA 25.2%), 수입액 기준 89.4%(한·페루 FTA 96.8%)

※ 양허제외, 관세율 할당,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비중 : 전체 농산물 대비 29.0%(한·페루 FTA 21.4%)

▣ 농산물 분야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관세율할당,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품목(협정대상에서 배제)·쇠고기*·분유*·고추·마늘·양파·인삼류 등 151개 품목(품목수 비중 10%)

※ 쇠고기중 정육 2개, 설육 3개 등 5개 품목은 19년 관세철폐로 양허하였으며, 정육 2개 품목에 대해서는 19년간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 탈·전지 분류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간 100톤의 관세율할당 제공(쿼터 내 물량 무관세 수입, 증량 없음 / 콜측도 우리와 동등한 조건으로 TRQ제공)

- (농산물 세이프가드) 쇠고기(정육 2개 품목)·만다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계절관세) 신선 포도 1개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5월~10월중 현행 관세 유지)
 - (장기관세철폐) 여타 583개 민감 농산물(품목수 비중 38.7%)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 ▣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철폐~3년내 관세철폐, 절화(cut flower, 관세율 25%)는 3년~10년내 관세철폐, 바나나(관세율 30%)는 5년내 관세철폐
- ※ 콜롬비아측 관심 농산물에 대한 우리 기체결 양허
- 커피류 : 對페루/미국/EU : 즉시철폐~5년철폐
 - 바나나 : 對페루/미국/EU : 5년철폐
 - 절 화 : 對페루 : 5~10년철폐, 對미국 : 즉시철폐~10년철폐, 對EU : 즉시철폐~5년철폐

【 콜롬비아 농산물 양허 】

- ▣ 쌀 및 쌀 관련 품목·쇠고기·우유·분유·오렌지·마늘·양파 등 47개 품목(품목수 비중 4.9%) 양허제외 및 여타 288개 민감 농산물(품목수 비중 30.5%)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 ▣ 대콜롬비아 수출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우리 주요 수출관심 품목인 라면, 음료, 비스킷 등 24개에 대해 즉시철폐

〈 한 · 콜롬비아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 위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평균)	콜 출 양허 (년)
1	커피볶지않은것/ 카페인미제거)	2	41,052	0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등(기타)	15	40,087	0
2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1,184	3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기타)	10	34,616	0
3	우황	8	1,121	5	어류 · 갑각류 · 연체 동물 등의 분 · 조분 및 펠리트(기타)	10	29,485	0
4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기타)	8	728	3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기타 베이커 리 제품(기타)	15	15,043	0
5	견과과실기타 (조제저장처리)	30	634	5	해조류와 기타 조류	10	14,888	0
6	원피(악어/유연처리 하지 않은 것)	1	589	0	불활성 효모와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10	8,869	0
7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인스턴트 커피)	8	404	3	식물성 수액과 엑스 (기타)	10	5,051	0
8	사탕수수당 (당도 98.5도초과)	3	268	0	차 또는 마태 조제품 등	20	3,873	10
9	자기 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8	251	5	기타 조제식료품	15	3,767	5
10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2	173	0	소금 및 향 첨가 비스킷	15	1,038	0
(10대 수입 소개)			46,403		(10대 수출 소개)		156,716	
농산물 수입 합계			47,244		농산물 수출 합계		157,960	

〈 한·콜롬비아 FT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양허유형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커피원두, 볶은 커피 등	244	즉시 철폐	517	조란, 견과류, 커피, 녹차, 사탕 과자류, 인삼음료, 정당 등
커피조제품, 밀, 코코아조제품 등	55	3년 철폐	2	카네이션
장미, 국화, 백합, 매니옥, 바나나, 애버카도우, 효모류, 빙과류, 위스키 등	418	5년 철폐	73	장미, 국화, 바나나, 곡분, 초콜릿 및 코코아 조제품, 로얄제리 등
기타절화, 파인애플, 망고, 수박, 두리언, 과일주스 등	54	7년 철폐	11	기타화초, 당근, 파인애플, 수박 등
냉동감자, 돼지고기, 양고기, 요구르트, 조란, 건조 포도, 멜론, 살구, 자두, 옥수수, 소시지, 소스류, 잎담배 등	297	10년 철폐	115	돼지고기, 양고기, 난류, 천연꿀, 시금치, 강낭콩, 타피오카, 감, 기타 당류 등
-	-	10년(AFD)	15	돼지고기(신선, 냉동, 도체), 소시지, 사료 등
닭고기, 오리고기, 표고버섯, 감 등	9	12년 철폐	7	냉동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사료용첨가제 등
난황, 계란	4	12년 철폐 (2년 유예)	-	-
냉동 닭가슴, 냉동 닭날개	2	13년 철폐	-	-
건조 표고버섯, 필터담배 등	4	15년 철폐	35	요구르트, 콩, 사탕수수당, 잎담배 등
-	-	15년(AFD)	70	대두(기타), 옥수수가루, 참기름, 돈지 등
닭고기(다리, 날개, 가슴, 치즈, 복숭아, 단감, 딸기, 생강 등	253	16년 철폐	38	버터, 치즈, 과일주스, 인조꿀, 만다린 등
냉동장,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2	16년 철폐 (2년 유예)	-	-
신선 포도	1	16년 철폐 (계절관세)	-	-
만다린	1	16년 철폐 (ASG)	-	-
-	-	18년 철폐	1	미절단 닭고기(냉동)

한국 양허		양허유형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	-	18년 철폐 (5년 유예)	2	닭고기 절단육 및 설육 (신선, 냉장, 냉동)
소 식용설육	3	19년 철폐	1	소 식용설육
정육	2	19년 철폐 (ASG)	2	정육
-	-	20년 철폐 (APB)	2	미절단 닭고기(신선, 냉장) 등
탈·전지분유	5	TRQ	6	탈·전지분유
쇠고기, 밀크·크림, 연유, 감자, 마늘, 양파, 고추, 오렌지, 감귤, 사과, 배, 인삼류 등	151	양허제외	42	쌀, 쇠고기, 우유, 분유, 고추, 마늘, 양파, 녹두, 팥, 오렌지, 감귤류, 사탕수수/무당 기타 (항미첨가) 등
		양허제외 (APB)	5	밀크·크림, 버터, 전분, 사탕수수
쌀 및 쌀 관련 품목	16	협정제외	-	-

* APB : 골촉 안데안가격밴드 적용유지 품목. 고정관세만 관세철폐기간에 걸쳐 균등 철폐(변동관세는 유지)

* ASG : 농산물 셰이프가드 설정 품목

* 유예 : 관세철폐기간 초기 해당 유예기간 동안 관세철폐 의무 배제(잔여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 양허제외 : 양허표상 기준세율 유지

* 협정제외 : FTA 협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품목.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3. 수산물

- ▣ 우리는 국내 산업비중이 크거나 대체성이 강한 냉동 명태·민어 2개 품목은 양허제외, 냉동오징어는 16년 장기관세철폐 하는 등 적절히 민감성 보호

- 총 137개 수산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철폐(품목수 기준 30.8%)
- 對콜롬비아 주요 수입품목인 열대어·닭새우류(2007-2009 평균 對콜 수입 308천불)는 5년내 관세철폐
 - ※ 열대어·닭새우류에 대한 우리 양허
 - (열대어 對미국·EU·페루 : 3년 철폐
 - (닭새우류) 對미국·페루 : 5년 철폐, 對EU : 3년 철폐

▣ 콜측은 수산물 전체 품목에 대해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10년내 관세철폐

- 對한국 수입이 있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10년 관세철폐

〈 한·콜롬비아 FTA 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개, USD, 07-09 평균)

양허단계	우리 양허				콜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0	43	9.66%	0	0.00%	24	14.46%	11	0.84%
3	67	15.06%	4	0.00%				
5	120	26.97%	309,014	100.00%				
5년 소계	230	51.69%	309,018	100.00%	78	46.99%	11	0.84%
7	76	17.08%	1	0.00%	37	22.29%	0	0.00%
10	134	30.11%	0	0.00%	51	30.72%	1,234	99.16%
10년 소계	440	98.88%	309,019	100.00%	166	100.00%	1,244	100.00%
16	3	0.67%	0	0.00%				
양허제외	2	0.45%	0	0.00%				
총합계	445	100.00%	309,019	100.00%	166	100.00%	1,244	100.00%

참고 1 콜롬비아측 주요 공산품 양허수준 비교

품목	관세율	한-콜롬비아 FTA	콜-미국 FTA	콜-EU FTA
승용차	35%	9년 (디젤 중형 4×4), 10년	즉시(가솔린대형 4×4), 10년	7년
화물자동차	10~35%	즉시, 7년, 10년	즉시, 10년	즉시, 7년, 10년
자동차 부품	5~15%	즉시, 5년	즉시, 5년	즉시, 5년, 10년
타이어	5~15%	즉시, 5년, 7년	즉시	즉시, 5년, 7년
컬러 TV	20%	5년	5년	7년
냉장고	5~20%	즉사~12년	즉사~10년	즉시~10년
에어컨	10~15%	즉시~5년	즉사~10년	5년~10년
세탁기	15~20%	5년~12년	즉사~10년	즉시~10년
섬유	0~20%	즉사~10년	즉시	즉시~10년
의류	20%	즉사~10년	즉시	즉시~10년
플라스틱	0~20%	즉사~10년	즉사~10년	즉시~10년
철강 및 철강제품	0~20%	즉사~10년	즉사~10년	즉시~10년

* 관세율 : 한·콜 FTA 콜측 기준세율

* 승용차(8703)에서 설상주행용 차량(870310)은 제외(관세율 20%, 5년 철폐)

참고 2 우리측 주요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품목	관세율	한-콜롬비아 FTA	콜-페루 FTA	콜-미국 FTA
쌀	—	협상대상에서 제외	협상대상에서 제외	협상대상에서 제외
식고기	신선·냉장·냉동 40%	양허제외 * 정육 2개는 19년+ASG	양허제외	15년+ASG
	식용 설육 18%	양허제외 * 꼬리·족·기타는 19년	16년	15년
돼지고기	냉장 22.5%	양허제외	10년, 16년 (삼겹살, 기타)	2014.1.1까지 철폐, 10년+ASG (삼겹살, 기타)
	냉동 25%	10년, 16년, 양허제외	10년, 16년	2014.1.1 (냉동 기타는 2016. 1.1까지 철폐)
	식용 설육 18%	16년	16년	2014.1.1까지 철폐
닭고기	냉장 18%	16년	10년, 10년+ASG	10년, 12년
	냉동 20%	12년, 13년	10년	10년, 12년
양념채소	고추 270%, 미늘 360%, 양파 135%	주요 품목 양허제외	주요 품목 양허제외	주요 품목 15년+ASG
커피류	2~8%	즉시~3년	즉시~5년	즉시~5년
절화	25%	3년, 5년, 7년, 10년	5년, 10년	즉시, 10년
분유	탈·전지분유 176%	양허제외+TRQ	양허제외	양허제외+TRQ
	조제분유 36%	10년	10년	10년+TRQ
	혼합분유 36%	16년, 양허제외	16년	10년
신선포도	45%	16년+계절관세	5년+계절관세	17년+계절관세
감귤	온주밀감 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
	만다린 144%	16년+ASG(20년)	16년+ASG(16년)	15년
오렌지 (신선·건조)	50%	양허제외	10년+계절관세	6년(비선형)+ 계절관세+TRQ
냉동 고등어	10%	10년	10년	12년(비선형)
냉동 민어	50%	양허제외	양허제외	12년(비선형)+TRQ
냉동 명태	3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비선형)+TRQ

* 관세율 : 한·콜 FTA 우리측 기준세율

원산지 규정

◆ 개 요

- ▣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 합의
- ▣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 각 품목의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
- ▣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자재 해외 조달비용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선택 기준(4단위 세번 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30-45% 등)으로 규정하거나 보다 완화된 기준(6단위 세번 변경)으로 규정
 - 완성차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순원가법을 선택기준으로 수용하되, 공제법에 대해서는 한·미 FTA 보다 낮은 비율로 규정
 - 육류·낙농품·곡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완전생산)으로 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

-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 합의
 - 부속서에 100개 품목 (섬유, 기계, 전기·전자제품, 시계 등) 규정

◇ 상세 내용

1. 원산지 일반 규정

가. 특혜 원산지 기준

- ▣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 (제3.1조)
 - 특정 상품이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및 협정문에 규정된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
 - 부속서에는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의 실질적 변형기준을 규정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해당 제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물 등에 적용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해당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그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외국산 재료와 국산 재료를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동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공산품이 이에 해당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CTC) Criterion)

- 재료와 제품의 세번(HS code) 변경 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 HS 2단위 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및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은 완화된 기준
- 예 :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 해당 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을 통해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
-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을 산정하는 RVC(Regional Value Content)가 대표적 계산 방법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 해당 제품의 제조·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일부 섬유 또는 의류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

■ 완전생산기준 (제3.2조)

- ① 양국의 영역에서 추출 또는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 ②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 꽃씨를 수입하여 재배 및 수확하여 꽃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
- ③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상품
 - ※ 살아있는 젓소 송아지를 수입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이후 해당 소 또는 그로부터 획득한 육류를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불인정
- ④ 양국의 영역에서 수렵, 어로 또는 양식을 통해 획득한 상품
 - ※ 제3국 국적 어선이 양국 영역에서 어로행위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에 대해서는 양국의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
- ⑤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해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해저·해상·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 ⑥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해저·해상·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 생물을 이용하여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 ⑦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해상·하층토에서 추출 또는 채취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이 해저·해상·하층토를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
- ⑧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당사국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 ⑨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공정 또는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의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역내가치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 계산 방법
(제3.3조)

- 부가가치기준 판단을 위한 역내가치비율 계산은 공제법(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외하는 방법) 및 집적법(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누적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부가가치가 높은 소수 원산지 재료와 부가가치가 낮은 다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특정 산업이 있다면, 공제법보다 집적법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필요

공제법(Build-down Method)

$$\text{역내가치비율(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AV(Adjusted Value) : 상품의 조정가치

집적법(Build-up Method)

$$\text{역내가치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 완성차에 대해서는 공제법/집적법과 순원가법(상품의 순원가를 기초로 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순원가법(Net Cost Method)

$$\text{역내가치비율(RVC)} = \frac{\text{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순원가(NC)}} \times 100$$

NC(Net Cost) : 상품의 순원가

나. 중간재 조항 (제3.5조)

■ 역내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제품(A)이 다른 제품(B)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 B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A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s)로 인정

■ 반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A)이 다른 제품(B)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B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A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 재료는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s)로 인정

※ 여러 가공단계를 거치는 공산품의 경우, 동 조항에 의해 역내가치비를 계산시 원산지 재료의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짐.

다. 최소허용기준 (제3.7조)

■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의한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의 가치가 제품 가치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 단, 농수산물(HS 1~24류)의 경우 최종제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6단위 세번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부 동식물성 유지 생산물(HS 15류)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이 비적용

※ 섬유(HS 50-63류)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직물(fibers) 또는 원사(yarns)의 중량이 최종제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재료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라. 대체가능 상품 (제3.8조)

▣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인정

- ※ 대체 가능한(fungible) 물품 및 재료 :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 목적상 서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
- ※ 선입선출법(first-in-first-out : FIFO) :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 후입선출법(last-in-first-out : LIFO) :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마. 기타 주요내용

▣ 누적(accumulation) 조항 (제3.6조)

- 상대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 최종제품 생산국의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로 인정

▣ 세트(set) 물품 (제3.10조)

-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전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간접 재료(indirect materials) (제3.13조)

- 제품 생산시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연료, 도구, 장비 등의 간접 재료는 원산지 판정시 비고려

■ 직접 운송(direct transport) (제3.15조)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를 인정
- 단, 제3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① 제3국에서 운송상 이유로 하역·분할, 재선적 또는 물품상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이상의 추가 공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②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③ 제3국에서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소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주요 특징

-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자재 해외 조달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 및 글로벌소싱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단, 완성차는 부가가치 기준만 인정)
 - ※ 승용차 : 역내가치비율 35-45%, 전기·전자·기계 : 대부분 4-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비율 30-45%, 정밀·석유화학 : 대부분 4-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비율 30-50%
-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

나.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품 목	HS Chapter	원산지 기준
자동차	87	· 완성차는 RVC 35%(집적법) / 45%(공제법) / 35%(순원가법) 이상 · 자동차 부품 등은 CTH 또는 RVC 30-40% 이상
전기·전자	85	· 진공청소기, 면도기, 헤어드라이기 등 대부분이 CTH 또는 RVC 30-35%(집적법) / 40-45%(공제법) 이상 · 전기다리미, 휴대용 전등 등은 CTH 또는 RVC 45%(공제법) 이상 · 전화기, 스피커, 이어폰, 축전지 등은 CTSH
기계	84	· 컴퓨터, 에어컨, 건설중장비, 베어링 등 : CTH(CTSH) 또는 RVC 30-35%(집적법) / 40-45%(공제법) 이상 · 냉장고, 세탁기 등 : CTH 또는 RVC 45% 이상 · 난방기, 펌프, 농기계, 인쇄기 등 : CTSH
섬유 및 의류	50-60 61-63	· 대부분 원사기준(yarn-forward) 적용(또는 CC/CTH를 적용하되 사 · 직물은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 * 포켓, 지퍼 등 악세사리의 경우 비적용 - 견, 면, 모, 마 등의 사(yarn) 및 직물(fabric) : CTH - 인조 섬유 : 대부분 CC 또는 CTH - 의류 : CC
신발	64	· 기본적으로 CTH, 일부 품목에서는 RVC 60%를 선택 적용 · 단, 역외산 갑피(upper)를 재료로 사용한 세번변경은 불인정
정밀화학	28-38	· 무기·유기화합물 등 : 대부분 CTH (일부 CTSH) · 비료 : CTH 또는 RVC 50%(공제법) 이상 · 비타민·호르몬 등 : CTH 또는 RVC 30%(집적법) / 40% (공제법) 이상 · 의약품, 화장품류 : 대부분 CTH 또는 RVC 40%(공제법) 이상
석유화학	27, 39, 40	· 석유, 광물, 플라스틱·고무 등 : 대부분 CTH · 플라스틱 판·필름 등 일부 플라스틱 제품 : CTH 또는 RVC 35%(집적법) / 45% (공제법) 이상 · 고무 관·호스 일부 고무제품 : CTH 또는 RVC 45%(공제법) 이상
철강	72-73	· 철강, 철강제품 : 대부분 CTH · 단,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CTH 또는 RVC 40%(공제법) 이상, 일부 철강제 방열기는 CTH 또는 RVC 30%(집적법) / 40% (공제법) 이상
비철금속	74-81	· 동·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 등 : CTH · 기타 비금속 : CTSH

※ RVC: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다.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

품 목	HS Chapter	원산지 기준
농산물	6-14	· 수목,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커피·차 등 : 완전생산기준 (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 · 맥아, 전분, 종자, 사료 등은 CC ※ 역외산씨, 뿌리, 뿌리줄기, 잡지, 싹 등을 수입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원산지 인정
축산물	2, 4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 완전생산기준(역내에서 나고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 · 낙농품, 조란, 천연꿀 등 : 완전생산기준(역내산 재료로부터 획득한 것)
수산물	3	· CC : 실질적으로 완전생산기준
가공 농·수산물	15-24	· 포도주·담배 등 : CTH, 당류·증류주 : CC (소주 : CTH)

3. 개성 공단

-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 합의
- 부속서에 규정된 100개 품목(섬유, 기계, 전기·전자제품, 시계 등) 적용

4

원산지 절차

◆ 개요

- ▣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수입 후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
 - 원산지 검증은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

◆ 상세 내용

1. 원산지 증명방식

- ▣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 채택
 - ※ 기관증명 :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의 승인된 기관이 발급
 - ※ 자율증명 :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생산자가 자유롭게 발급
- ▣ 증명서 양식은 양국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된 동일한 양식을 사용

〈 한·미, 한·EU, 한·콜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한·미 FTA	한·EU FTA	한·콜 FTA
발급방식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발급주체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인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2. 원산지 증명서 관련 기타 사항

- ▣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유효 (제3.18조)
- ▣ 수입국 관세당국은 한·콜 FTA 협정 발효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규정 (제3.18조)
-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제3.20조)
 - 수입 후 1년 이내 또는 수입국 법령에 따라 규정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 신청 가능
- ▣ 원산지 증명서 면제 (제3.21조)
 - 통관 가치가 미화 1천불, 이에 상응하는 수입국 통화 가치 또는 수입국이 정하는 그 이상의 금액 이하인 경우 및 수입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불요
- ▣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제3.23조)

※ 수입자 :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 우리의 관세부와 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증빙서류 : 회계기록과 같이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공정, 생산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전자방식 보관에 관한 근거는 국내법에 기반된 사항(FTA 관세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3. 원산지 검증 방식

□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 (제3.25조)

※ 직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verification visit) 등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

※ 간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

- 단,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방문조사 하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도 동행하나 그 역할은 참관자(observer)로 제한

〈 한·미, 한·EU, 한·콜 FTA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

한·미 FTA	한·EU FTA	한·콜 FTA
원칙적으로 직접검증	원칙적으로 간접검증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 개요

- ▣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법령의 공표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제, 관세 문제 관련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 보장, 통관 관련 교환된 정보의 기밀유지 및 사용제한, 양국간 관세협력 강화 및 관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 상세 내용

1. 관세행정의 투명성 증대 제4.2조

- ▣ 관세행정 절차의 투명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 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 공표를 의무화
- 이해관계인의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창구(inquiry point) 운영 의무

2.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 ▣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화물은 중점 검사하되, 저위험 화물은 통관 및 반출 절차를 간소화 (제4.5조)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화물위험관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을 개발하여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검사하는 제도를 운영중

- ▣ 신속한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당사국의 간소화된 통관절차 유지 의무 규정 (제4.7조)

- 물품 도착 후 가능한 한 48시간 이내 반출, 수입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 ▣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속 통관절차 유지 의무 (제4.8조)

※ 원칙적으로 미화 100불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 및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

3. 원산지 등 사전심사제 (제4.9조)

- ▣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등에 관하여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생산자의 의문사항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심사 제도 규정

※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특히 영세 중소기업체의 특혜관세 활용을 제고시키는 효과 기대

4. 재심 및 불복청구(제4.10조)

- 수입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관세 관련 처분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재심의 기회를 보장

※ 우리나라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는 관세 관련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입국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서명자, 사전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자에게 수입자에게 보장하는 것과 같은 재심 및 불복청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

-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산지 소명자료는 제품원가 등 기업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기 곤란하므로 수입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 관세협력(제4.11조)

- 당사국은 수출입 관련 동 협정 이행 및 운영, 특혜관세 혜택 및 신청 절차, 검증 절차, 관세 평가 및 품목분류, 수출입 제한 및 금지 관련 국내법령 준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원산지 및 통관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도 협력 사항에 포함

6. 비밀보장(제4.20조)

- ▣ 원산지 규정·절차(제3장) 및 관세행정·무역원활화(제4장)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당사국 의무를 규정
-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정보 공개 불가. 다만, 법집행 목적 또는 사법 절차상 필요할 경우 공개 가능

7. 관세위원회(제4.21조)

- ▣ 원산지 규정·절차(제3장) 및 관세행정·무역원활화(제4장)의 이행 및 그 적용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검토 및 해석·적용·운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 당사국 관세당국 등으로 구성된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 설치

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개 요

- ▣ WTO SPS 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 ▣ SPS 조치 관련 사항 협의를 위해 SPS 위원회 설치
- ▣ 양국간 SPS 관련 분쟁은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 상세 내용

1.SPS 챕터의 목적 및 WTO SPS 협정상 권리 · 의무 확인

- ▣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과 동 ·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SPS 챕터의 목적임을 명시 (제5.1조)

SPS 조치

- 인간과 동 ·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 (제5.3조)

2. 위험평가(제5.4조)

- 위험평가는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상대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노력

3. SPS 위원회 설치 (제5.5조)

- SPS 조치 관련 사항 협의를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
 - SPS 조치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규정·절차·위생 지위 변경에 대한 정보 교환 촉진, SPS 조치와 관련 발생한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
- 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45일내에 구성되고,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 2년마다 개최

4. 분쟁해결절차 (제20.2조)

- 양국간 SPS 조치 관련 분쟁은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개 요

-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양국간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규정
- ▣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기술협력, 정보제공 및 양국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TBT 조정기관 지정

◇ 상세 내용

1.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제6.7조)

- ▣ WTO TBT 협정에 따라 제·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안)를 WTO에 통보할 때, 동시에 상대국에도 통보

- 국제표준과 부합하거나 양국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안)에 대해서도 가능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
- ▣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안)에 대해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 부여
 - 당사국은 제출된 중요한 의견에 대한 회신 또는 그 요약본을 인쇄본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
 - ※ 60일 기간(WTO/TBT 권고사항) 확보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한·미 FTA, 한·EU FTA에도 기규정)
 - ※ 우리나라는 TBT 통합포탈정보사이트(www.knowtbt.kr)에서 TBT관련 제반 정보 제공
- ▣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개정시, 상대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개정 목적(objective), 정당성(rationale)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술규정이 채택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통상마찰 사전 예방효과 기대)
- ▣ 생산자가 수입당사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생산방식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규정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

2. 국제표준(제64조)

- ▣ WTO TBT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를 제·개정하는 경우 국제표준에 기반

- 국제표준의 존재 여부 판단은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 표준 개발원칙에 근거
 - ※ WTO의 TBT 위원회는 국제표준의 개발원칙으로서 합의성, 공정성, 공개성, 통일성, 시장적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채택(G/TBT/Rev.9, Part 1의 Annex B, 2008.9월)

3. 기술규정의 동등성 제6.5조

- 상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 기술규정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국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는 경우, 상대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
- 수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 요청시 그 사유를 설명
 - ※ WTO/TBT(제2조제7항)에서도 기술규정의 동등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4. 적합성 평가절차(제6.6조)

- 양국은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공급자 적합성 선언, 상대국에 소재한 기관의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의 수용 등에 합의 가능
-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 적합성 평가절차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기술규정·표준을 만족할 때, 가능한 경우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

- 상대국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 ▣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 교섭을 위한 상대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5. 공동 협력 [제6.8조]

- ▣ 기술장벽 관련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상대국의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
- 특히, 특정 사안·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 개발 및 증진 노력
 - * 무역촉진 이니셔티브의 예 : 투명성, 우수규제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등
- ① 자동차 부품, ② 섬유·의류 및 디자인, ③ 화장품 및 위생품, ④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 가능

6. TBT 위원회 설치 [제6.9조]

- ▣ 동 챗터의 이행 감독,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TBT 문제의 신속한 처리,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 개발·채택·적용·집행 관련 문제의 신속한 착수, 상호인정협정(MRA) 협상 촉진, 정보 교환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양국간 TBT 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
 - ※ TBT 위원회 담당 운영기관 : 우리측 기술표준원 및 콜측 통상산업관광부

무역구제

◇ 개 요

- ▣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 하되,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은 유지
-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

◇ 상세 내용

1. 세이프가드 (Section A)

【양자 세이프가드】

- ▣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결과,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원칙적으로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의 경우 동 관세철폐기간 동안 발동 가능
-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 다자 세이프가드 】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 금지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Section B)

■ 반덤핑마진 계산시 '제로잉 금지' 원칙 준수 노력

※ 제로잉 금지 : 반덤핑마진 계산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핑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는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하도록 하는 원칙("Lesser-duty Rule") 준수 노력

※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상 ‘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적용의무는 미규정(WTO 반덤핑 협정 제9.1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협정 제19.2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절차 투명성을 강화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조사개시전 상대국에 서면 통보 및 협의기회 제공
- 예비판정후 수출업자의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협의 기회 제공

투 자

◆ 개 요

▣ 협정 구성 : 3개의 절(Section)로 구성된 본문 및 관련 부속서

■ 본문 제1절(Section A)은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 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대우 : 내국민대우(NT) 및 최혜국대우(MFN) 부여, 투자관련 이행요건(PR)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SMBD)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금지, 최소기준대우, 손실 또는 수용시 보상, 송금 보장 등

- 예외 : 혜택의 부인, 비합치조치* 등

* NT, MFN, PR, SMBD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비합치조치”)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보목록에 명시할 것을 규정

■ 제2절(Section B)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규정

■ 제3절(Section C)은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규정

■ 부속서에서는 간접수용 판단법리 및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규정

▣ 협정 적용범위 : 투자와 관련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당사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도 포함
- 본 협정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또는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상세 내용

1. 투자의 대우

가.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 (제8.3조)

-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
- ▣ 진입단계의 투자(설립, 인수, 확장)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보장토록 규정

※ 투자보호의 대상인 ‘투자자(investor of a Party)’의 범위에 투자를 시도하는 (attempts to make an investment) 자도 포함

나. 최혜국대우(MFN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8.4조)

- ▣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게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하며,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 부여

- 단,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서명되는 협정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 (미래 MFN)
-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가 미래 MFN 대상인 가운데, 아래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의한 MFN 대우도 제외
 - 우리나라 : ① 항공, ② 어업, ③ 해운, ④ 위성방송, ⑤ 철도 등
 - 콜롬비아 : ① 항공, ② 어업, ③ 해운 등

다.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제8.5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미

라. 수용 및 보상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제8.7조)

- 정부는 ① 공공목적을 위해 ②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③ 적법절차와 협정상 최소기준대우에 따라서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및 국유화 할 수 있으나,
- 신속·적절·효과적(prompt, adequate and effective)으로,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

- 당사국은 또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도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간접수용: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의미

-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 (단, 투자보호 관련 사항이 불포함된 한-EU FTA를 제외) 및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

※ 간접수용의 판정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용부속서에서 규정 (상세 내용은 68쪽 수용부속서 내용 참조)

마. 송금(Transfer) 보장 (제8.8조)

- 당사국은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부당한 지체 없이(freely and without undue delay)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단,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가 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 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 ④ 형사범죄, 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아울러,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시 자본거래 통제 등 긴급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송금부속서(부속서 8-다)에 규정

바. 이행요건(PR : Performance Requirements) 부과 금지 (제8.9조)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 일정 수준 또는 일정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수출 및 국내 재료 사용 달성,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 공급 등 7가지
 - 단,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는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부과 가능
- 그 외 일정 비율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이행요건은 모두 부과 가능
- 또한 상기 금지된 이행요건도 ①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 공공 정책적 목적의 경우, 또는 ② 유보(부속서)에 기재한 경우 부과 가능

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국적제한 금지 요건 (제8.10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 단,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materially impair the ability)해서는 안 됨.

2. 협정상 예외 조치

가. 투자와 환경(Investment and Environment) (제8.11조)

-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은 투자활동이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규정

나.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제8.12조)

- 당사국은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방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방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이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다.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제8.13조)

- 유보목록에 기술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시장접근 관련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① 내국민대우(NT), ② 최혜국대우(MFN), ③ 이행요건(PR),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등에 대해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유보로 기재하는 경우, 동 조치에는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정부조달과 보조금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관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3.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I

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 ▣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1절(Section A)상 의무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요청 가능 (제8.16조제1항)
- ▣ 국제중재는 3 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제8.21조)

 - 투자자와 피청구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나머지 1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임함.
 - 단, 중재 제기후 적용 가능한 중재 규칙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CSID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들과 상의한 후에 자신의 재량으로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임
- ▣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절차 (제8.18조)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 ※ ICSD :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회원국(우리나라와 콜롬비아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공
 - ICSID 추가절차규칙
 - ※ ICS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의 관할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모국과 피청구국이 모두 ICSD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 등 협약 제25조에 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양국 중 일방이 ICSD 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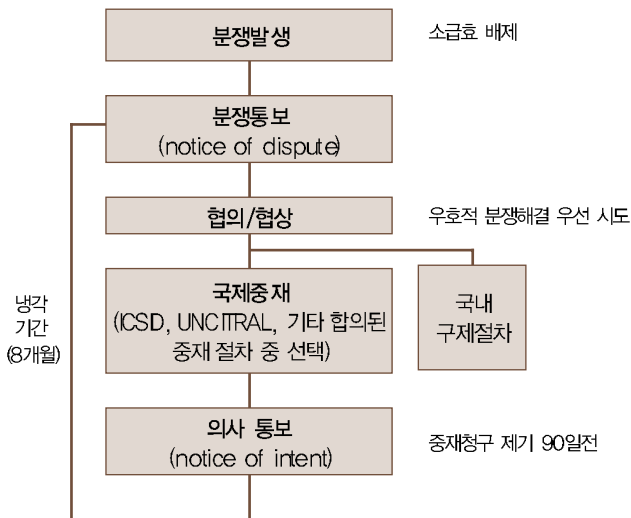
※ UNCITRAL :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 절차 및 규칙을 규정

-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3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 국제중재판정의 효력 (제8.26조)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final and binding)
- 중재판정은 피청구국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선언, 금전적 손해 및 적용가능한 이자의 보상,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를 포함할 수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ISD 절차 개요 〉





※ 투자유치국 정부의 위배조치로 투자자(또는 투자기업)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중재 신청 불가

나.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간 관계

-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상대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ISD에 의거하여 국제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바, 일단 하나의 절차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이용 불가능 (“fork in the road”) (제8.18조제4항)
-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중재청구 제기 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내의 비사법적 행정 검토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 가능 (제8.18조제2항)
- 단, 이러한 절차는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국내 행정 검토 절차의 어떠한 결정도 투자자의 ISD 제기를 금지하지 않음.

다. 사전동의조항 (제8.19조)

- 투자협정 체결의 핵심규정으로서 양 당사국이 본 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함을 규정

〈 한·미 FTA 와의 ISD 주요 조항 비교 〉

	한·미 FTA 제11장	한·콜 FTA 제8장
ISD 제기 가능 대상	1) 협정상 의무 위반 2) 투자계약 3) 투자인가 위반	협정상 의무 위반으로 한정
제척기간	3년	3년 6개월
냉각기간	분쟁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분쟁 통보일(date of notice of dispute)로부터 8개월 국내행정진지 규정 마련 - 피청구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제기 전에 피청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내의 비사법적 행정 검토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단, 이러한 절차는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국내 행정 검토 절차의 어떠한 결정도 투자자의 ISD 제기를 금지하지 않음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 미국인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 절차 제소 중 하나를 사전 선택 필요 ("fork in the road") - 한국인 투자자는 미국정부를 미국 법원 제소 후에도 동 미국 국내법원 재판 절차 중지를 전제로 국제중재 절차 개시가능 ("waiver")	상대국의 법원 또는 국제중재 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 ("fork in the road")
이용가능 국제중재소	- ICSD 협약 및 중재절차규칙 - ICSD 추가절차규칙 - UNCITRAL - 기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중재 기관	좌동
중재인임명	- 각국이 1명씩 지명하고,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임명 - 미합의시 ICSD 사무총장이 의장 중재인 임명	좌동
사전동의	규정	좌동
준거법	본 FTA 협정과 국제법	좌동

4. 용어 정의 (Investment)

가. 투자(investment)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투입,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등 투자의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서, 아래 형태를 포함함.

- ① 기업
- ② 주식, 증권, 기타 기업의 지분참여 형태
- ③ 채권,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증서, 대부
- ④ 선물, 옵션, 그리고 기타 파생금융상품
- ⑤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
- ⑥ 지식재산권
- ⑦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유사한 권리
- ⑧ 기타 유형 또는 무형 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 등 관련 재산권

※ 시장점유율, 시장접근권, 기대이익, 이윤창출 기회는 그 자체로서 투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각주 추가

▣ 다만, 공채운영(public debt operation) 및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은 투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

- 한 쪽 당사국 영역 내의 국민 또는 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 무역금융과 같은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신용의 기한연장, 또는
-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 참고로, 이 협정의 목적상 ‘공채운영’은 투자의 정의에서 제외되나,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 의무는 공채 운영에 적용됨.
- 따라서, 당사국의 공채운영의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이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중재청구 제기 가능 (각주 17)

나. 투자자 (investor)

- 일방의 국가, 공기업,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국 국가의 영토 내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경우를 의미
- 이중국적자는 지배적이고 유효한(dominant and effective)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

5.부속서

가. 수용부속서 (부속서 8-나)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를 규정하여 중재 재판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 지침을 제시
- 주요 내용
 - 간접수용을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재산권 몰수가 없더라도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가조치’라고 정의

- 간접수용 해당 여부의 판단은 ①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③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상기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 등 공공복지를 위한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

- 특히, 간접수용 판단법리에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의 원칙인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하여 정부조치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하여 감수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 이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정부조치의 성격을 심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규정

나. 송금 부속서 - 단기세이프가드 (부속서 8-다)

-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시, 외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 단기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세이프가드 발동 유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고,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

* 단,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상대국에게 사전 통보 후 1년간 추가 연장 가능

- 참고로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발동시 ①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하여야 하며, ② 몰수(confiscatory)에 상응하거나 이중 환율제(dual exchange rate)를 구성해서는 안 되고, ③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④ 상대국에게 신속히 통지되고, ⑤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자금의 해외 이전을 제한해서는 안 됨.

국경간 서비스 무역

◆ 개 요

▣ 협정문의 적용범위

- 양국간 서비스 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관련 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서비스 등은 제외

※ 도박서비스 관련 예외는 부속서한에 명시

※ 금융 서비스는 양 당사국이 협정 발효일 4년 후 FTA 안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규정 (제9.12조)

※ 정부조달은 별도 챕터에서 논의

- ▣ 협정문상의 주요 의무로는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투명성 제고, 자격상호인정, 지불 및 송금 등을 규율

◆ 상세 내용

1.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 (NT : National Treatment) (제9.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대우 (MFN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9.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시장접근 (MA : Market Access) 제한 조치 금지 (제9.4조)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② 서비스 총 거래액 또는 자산 총액,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 ④ 고용인의 총 수,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 (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현지주재 (LP : Local Presence) 의무 부과 금지 (제9.5조)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 단, 상기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조항(제9.6 조)에 의거하여 부속서 유보 목록에 적시
- 한·콜롬비아 FTA의 서비스분야는 한·미 FTA에서와 같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현재유보(부속서 I) 또는 미래유보(부속서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2. 국내 규제 [제9.7조]

- ▣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있는 당국이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할 의무 (부속서 II 유보사항은 제외)
-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 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의무

3. 투명성 [제9.8조]

- ▣ 서비스 관련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시 합리적인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유지할 의무

4. 자격상호인정 (제9.9조)

- 특정 국가 또는 비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는 이와 같은 상호인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의무와 자격 상호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 교환의 의무를 규정

5. 지불 및 송금의 자유 (제9.10조)

-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단,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 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 ④ 형사범죄, 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아울러,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시 자본거래 통제 등 긴급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송금부속서(Annex 8-C)에 규정

6. 혜택의 부인 제9.11조

- ▣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의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7.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부속서 (부속서 9-가)

- ▣ 양국은 각각 자국내 관련기관이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인증 관련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 관련 권고를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에 제공하도록 독려
- 공동위원회는 동 권고 접수후 합리적 기간내 검토하고, 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양국은 자국내 주무당국이 그 권고를 상호 합의한 기간내 이행토록 권장
 - ※ 전문직 서비스 표준·기준 개발 가능 세부 분야
 - 교육 : 학교 또는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인가
 - 시험 :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 경력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기관과 내용
 - 행동 및 윤리 : 직업행동표준과 그러한 표준과의 비합치성에 대한 징계조치의 내용
 - 전문성 개발과 자격증의 갱신: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 서비스 활동 범위: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한계
 - 현지 지식 : 해당 지역의 법률, 규정, 언어, 지형 또는 기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식 요건
 - 소비자 보호 : 담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및 고객보상기금과 같은 거주요건에 대한 대안을 포함

서비스/투자 통합 유보

◆ 개 요

▣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 챕터와 서비스 챕터의 주요 의무*에 위배되는 현존 및 미래의 비합치조치를 부속서에 유보목록으로 명시함으로써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국적요건 부과 금지 등 4개 의무

* 서비스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 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등 4개 의무

☞ 여타 의무는 유보대상이 아님.

Negative 방식의 유보 종류

① 현재유보(Annex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자유화 이전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울러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② 미래유보(Annex II)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 면허·허가·인가 요건 등)는 서비스 챕터의 「국내규제」조항에 의거, 국내정책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 가능

■ 콜롬비아는 미국과 체결한 FTA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공급자들의 진출 여건 보장

■ 특히, 콜롬비아는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동일 분야 개방 수준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방할 것임을 명시

■ 우리는 한·미, 한·EU FTA에서 기개방한 분야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수준 조절

■ 한·미 및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

■ 아울러, 통신 분야에서 외국인 간접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를 현행법 수준으로 규정하고(한·미 및 한·EU시 허용한 간접투자 불허), 한·미 FTA에서는 현재유보로 처리하였던 방송 및 성인 교육 서비스를 미래유보로 처리

◆ 우리나라 유보 내용 일람

1.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포괄 유보

- ▣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미래유보)
- 고등 교육(대학교)은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성인교육 및 원격교육 분야는 소비자보호 장치 등 향후 제한조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유보 (미래유보)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및 산업환경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규제수준을 유보 (현재유보)

2. 국내 전문직 서비스

- ▣ 콜롬비아 공인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콜롬비아 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한·미 FTA에서와 동일하게 3단계로 허용

※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콜롬비아는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동일 분야 개방 수준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방할 것임을 명시함에 따라,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콜롬비아에서 동등한 대우 부여

법률 서비스(외국법 자문사) 단계별 개방 의미

- 1단계(발효시) : 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발효후 5년내) :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간 조인트벤처 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 회계·세무 서비스는 콜롬비아에 우리와 유사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전문자격제도가 없음을 감안, 국내 자격 취득자로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현행법령 반영

3. 방송·통신 서비스

가. 통신 서비스

- 현행 통신 관련 국내법의 시장접근 제한사항을 현재유보에 기재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현행 49%로 유지 하였고, 한·미 및 한·EU FTA에서의 간접투자 개방은 미허용
 - ※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의 간접투자 개방 약속
 -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100%까지 허용(유예기간: 협정 발효 후 2년)
 - 단, 핵심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

나. 방송 서비스

- 방송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관련 사항을 포괄 미래유보함으로써 향후 자율적 규제 권한 확보

※ 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 PP) 인 · 허가제도,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등

다.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 (예: IPTV) 분야를 포괄 미래유보함으로써 자율적 규제 권한 확보

※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4. 문화 관련 서비스

가.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미래유보)

나.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 ▣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미래유보)
- ▣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① 외국정부 및 외국인, ②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업, ③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콜롬비아 내에서 편집된 원어(스페인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국내의 지사·지국이 이를 인쇄·배포할 수 있음을 명시

5.기 타

가.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 및 저장·창고 서비스

- ▣ 농·축산물의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위탁중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가공 농산물, 산동물 및 식음료에 대해 미래유보하고, 도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및 비료에 대해,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쌀, 인삼, 홍삼에 대해 미래유보
- ▣ 저장·창고 서비스 관련 농·축·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나. 육상운송 (여객·화물운송)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의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해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에도 동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 과잉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 확보

다.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재유보 기재를 통해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미래유보)

※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등 “전문직 분야의 개방”이란,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라.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확인

마. 시장접근(MA) 의무 적용 범위 상향조정

- 시장접근 의무 관련 양측은 최소 GATS 양허안 수준 이상의 개방을 보장하면서, 그 이상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시

기업인의 일시입국

◆ 개 요

- ▣ 양국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민·구직행위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기업인(business persons): 상품무역, 서비스 공급, 투자 활동과 관련한 자연인

- ▣ 일반원칙, 일반의무, 일시입국의 허용, 정보제공, 분쟁해결 등 총 10개의 조항과 1개의 부속서(Annex) 및 4개의 부록(Appendix)으로 구성
- 부속서에서는 일시입국 종류를 상용방문자, 무역가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 분류하여 규율
- 부록에서는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s)에 의해 수행가능한 상업적 활동의 범주를 예시하고(부록 10-가-1), 일시입국 종류별 체류 가능 기간을 규정하며(부록 10-가-2), 계약서비스공급자의 양허직종을 나열하고(부록 10-가-3), 양국의 주요 출입국 관련 법령을 명시(부록 10-가-4)

◆ 상세 내용

1. 협정문 주요 내용

가. 일반원칙 · 의무 (제10.1조 및 제10.2조)

- 양 당사국이 기업인의 일시입국 관련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서비스 · 상품 교역 및 투자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면서 동 협정의 범주에서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구직자와 국적 · 시민권 · 영주권 획득을 위한 이민자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나. 일시입국의 허용 (제10.3조)

-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공중보건 · 안전 · 국가안보 등 관련 출입국관리법령을 준수할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하여야 함을 명시
- 단, 기업인이 취업 예정지에서 진행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혹은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사람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입국서류 발급 거부 가능

다. 정보의 제공 (제10.4조)

-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챕터에서 규정된 일시입국의 요건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공표하거나 자국 및 상대국 영역내에서 이를 이용 가능토록 하여야 함.

라. 작업반 (제10.5조) 및 접촉선 (제10.6조)

- ▣ 양국은 이 챕터의 이행, 운영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동 작업반은 출입국 관련 공무원과 접촉선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

마. 분쟁 해결 (제10.7조)

- ▣ 양국은 원칙적으로 일시입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분쟁 해결규정(제20장)에 의한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함.
- 다만, 이 챕터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 거절에 관해, ①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② 해당 기업인이 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규정(제20장)에 의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2. 일시입국 대상자 구분 및 입국허용 기준 (부속서 10-가)

구 분	내 용
Section A: 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	· 협정문 부록(Appendix) 10-가-1에 나열된 상용 활동(business activities)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 *부록 10-가-1(예시적 목록): 시장, 기술, 통계 및 과학 조사, 사업상 연락, 현장 방문, 회의 및 협의, 계약 협상, 수출입된 기계의 설치 또는 보수, 학회 또는 세미나 참석, 상품이나 사람의 적재 또는 운송 등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 상대국 국민임을 증명, 동 부록에 나열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함을 입증, 현지 노동시장 진입 의지가 없음 (상용 활동의 주 수입원 및 주 영업소가 일시입국 허용국 영역밖에 있음)을 입증할 경우, 취업허가 획득 요구 없이 일시입국 허용 ·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수량제한 부과 금지

구 분	내 용
Section B: 무역가 및 투자자 (Traders and Investors)	· 관리자나 임원 또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품·서비스 무역에 종사하거나, 상당한 자본을 투자 혹은 투자과정에 있으며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시 일시입국 허용 ·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수량제한 부과 금지
Section C 기업내 전근자 (Intra- corporate Transferees)	· 일시입국 신청 바로 전날까지 법인의 기업에 적어도 1년 이상 고용된 기업인으로서 그 법인의 자회사, 지점, 계열사 등으로 전근하는 고위간부·경영진·전문가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시 일시입국 허용 ·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수량제한 부과 금지
Section D: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 부록(Appendix) 10-가-3에 나열된 직종에 종사하는 계약서비스공급자 * 부록 10-가-3 : 163개 전문가 양허 직종 명시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 상대국 국민임을 증명, 입국목적 증명(서비스공급계약서 등), 전문가 자격요건(관련 학위 혹은 기타 자격 증명서류)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일시입국 허용 · 수량제한 가능. 단, 사전승인절차 및 노동시장테스트 부과 금지
Section E: 배우자 및 부양 가족 (Spouses and Dependants)	· 무역가 및 투자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 및 관련 고용 자격 충족시 일시입국 허용 ·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수량제한 부과 금지
Section F: 경영연수생 (Management Trainee)	· 당사국의 법인에 의해 최소 1년 고용되었으며,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자회사 등에 파견 근무 · 수량제한 가능. 단, 사전승인절차 및 노동시장테스트 부과 금지

3. 계약서비스 공급자 양허 및 자격 조건

- 전문가(Professional)의 범주를 계약서비스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로 한정하여 설정함.

※ 전문가는 계약서비스공급자(CSS)와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로 구분되는 바, CSS는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을 의미하며, IP는 법인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을 의미

- 계약서비스 공급자 입국시에도 전문가의 급격한 유입 증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량제한(numerical restriction)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조항 마련

- 법인 소속의 자연인으로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입국 전 최소 1년 이상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국내 진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1년)

- 양허 대상 전문가 직종은 한·인도 CEPA 수준으로 총 163개

※ IT분야 위주로 작성된 한·인도 CEPA상 양허직종 163개 중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제외하고, 콜롬비아 측의 요구로 '건축사'를 추가하여 확정

통 신

◆ 개 요

- ▣ 통신 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장(章)에서 다루고, 통신 장(章)은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 협정문은 총 3개 절(Section), 17개 조항으로 구성

◇ 상세 내용

1. 협정 적용범위(제11.1조)

- ▣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용
- ▣ 구체적으로,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 관련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 공급에 관한 조치 등에 적용
- 방송서비스에 관한 조치는 적용 배제

2.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제1절)

- ▣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함.

- ▣ 단, 당사국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 접속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3. 지배적 공중통신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제2절

- ▣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다음 의무를 준수하도록 당사국이 보장 또는 적절한 조치를 유지

* 지배적 사업자(major suppliers):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통화의 KT나 이동통신의 SKT가 해당

-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사업자에게 부여

-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행위 금지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익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상호접속을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망의 모든 지점에서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조건(기술표준·규격 등)으로 제공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재판매* 제공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

* 재판매(resale):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가 자사 소유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여타 군소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 ▣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개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표준 상호접속 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

4. 그 밖의 조치 (제3절)

▣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 의무 부과 금지

-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 서비스 요금의 비용상 정당화, 서비스 요금표 제출, 자사 망의 특정 고객과 연결, 공중통신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 준수
- 단, 반경쟁적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치 가능

* 부가서비스: 통신망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일례로, 날씨·관광 음성 정보 제공 서비스 등

▣ (규제기관의 독립성) 정보통신 규제기관이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관련 절차가 공평하도록 보장

▣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를 당사국이 규정할 수 있도록 상호 허용하는 한편,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규제 당국이 투명·비차별적·경쟁중립적인 형태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을 규정

※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산간 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

▣ (허가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

■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조치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국은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수립 권한 보유

■ (통신 분쟁해결)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 신청, 재심 청구 및 사법심사 요청 가능

■ (투명성)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국내 관련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보장

전자상거래

◇ 개 요

▣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송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관행 유지

▣ 전자상거래의 초국경적 성격을 감안,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협력 활동 규정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며, 기술 발달에 따라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로 협정문에서 특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 상세 내용

1. 온라인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제12.2조)

▣ 전자적 수단을 통해 수·출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관행을 유지

- 단, 이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전송된 제품에 대해 내국세나 기타 국내 부과금을 부과할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 온라인 전송물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1998년 제2차 WTO 각료회의(제네바)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가 채택되어,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연장
- 한·미 FTA, 한·EU FTA, 한·페루 FTA 등에도 규정
- ※ WTO에서의 무관세 결정은 회원국 전체 합의에 의해 연장되어 왔음.
- 이미 미국, 싱가포르, 호주, 칠레,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FTA에서 (영구적) 무관세를 명시적으로 도입

2.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 (제12.3조 및 제12.5조)

- ▣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유지 (제12.3조)
- ▣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기만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 (제12.5조)

3. 기타 협력 사항

- ▣ 종이없는(paperless)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행정문서*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법적 효력을 종이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 (제12.4조)

* 무역행정문서 :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중 정부에 의해 발행 또는 관리되는 문서를 지칭하며, 원산지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

-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제12.6조)

경쟁 및 소비자 정책

◇ 개요

- ▣ 경쟁채터의 목적, 경쟁당국 및 경쟁법 유지 등 이행 의무, 통보·협의·기술지원·정보 교환 등을 통한 경쟁당국 간 협력, 소비자 보호, 공기업 및 지정독점기업에 대한 국내 경쟁법 적용 등을 규정

◇ 상세 내용

1. 목적 및 이행 [제131조 및 제132조]

- ▣ 경쟁 제한적 관행(anti-competitive practices)을 금지하는 것이 무역자유화 혜택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 (제13.1조)
 - ※ 경쟁 제한적 관행은 ① 경쟁제한적 목적 또는 효과를 지닌 사업자 간 합의 또는 사업자단체의 결정, ② 독점적 지위 남용, ③ 효과적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기업결합 등을 의미 (제13.11조)
 - ※ FTA 체결로 인해 상품·서비스의 무역 자유화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또는 카르텔 등을 빈번히 결성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경쟁법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역자유화 효과가 반감될 우려 존재

▣ 상기 목적을 위해 각 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이행 (제13.2조)

- 경쟁법 및 그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유지
-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
- 경쟁법 집행시, 경쟁당국은 투명성, 시의 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 준수

※ 경쟁법은 한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콜롬비아의 '1959년 155법', '2009년 1340법' 및 '1992년 Decree 2153'을 의미

2. 경쟁당국 간 협력

▣ (경쟁법 집행) 통보·협의·기술지원·정보교환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집행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 (제13.3조)

- 자국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조정 요청 가능
- 다만, 이러한 조정은 경쟁당국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됨.

▣ (통보)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집행 활동은 상대국 경쟁당국에 통보 (제13.4조)

▣ (협의) 상호 이해 증진 또는 경쟁챗터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사안을 다루기 위해 상대국 요청시 협의 개시 (제13.5조)

-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상대국의 우려 사항을 충분하고 호의적으로 고려
- ▣ (기술지원) 상호 경험 공유, 경쟁법·정책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경쟁 문화 촉진 등을 위해 상호 기술지원 가능 (제13.6조)
- ▣ (소비자 보호)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법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과 관련한 협의,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호 협력 (제13.8조)
 - ※ 소비자보호법은 한국의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콜롬비아의 ‘헌법 제78조와 제333조’, ‘소비자보호법-1982년 Decree 3466’을 의미

3. 기밀 유지 (제13.7조)

- ▣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당사국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 상대국 경쟁당국의 정보 요청 시 당사국 경쟁당국은 해당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
- 경쟁당국이 비밀을 전제로 제공받은 정보는 정보제공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공개 불가

4. 공기업 및 지정독점 (제13.9조)

□ 공기업 및 지정독점의 설립·유지 가능

- 공기업 및 지정독점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공공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법이 적용되고, 공기업 및 지정독점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채택·유지하지 않도록 보장

정부조달

◇ 개 요

- ▣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콜롬비아는 WTO GPA 옵서버 국가

WTO GPA

- 정부조달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WTO 복수 국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1994)에서 여타 WTO협정과 함께 서명되어 1996.1.1 발효
- 현재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41개 국이 가입(우리는 1997.1.1 발효)하였으며, 콜롬비아는 미가입국
- 동 협정 가입국은 부속서의 자국 양허표에 개방범위(양허기관 및 양허하한선 등)를 기재하고,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의무 부담

- 정부조달 일반원칙 및 절차 등의 협정문은 WTO GPA 개정 협상에서 2011.12월 타결된 개정 GPA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따라서 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도 정부조달 절차 진행시 우리 기업에 대해 GPA 가입국 수준의 의무 부담
- 민자사업도 협정 적용대상 조달로 규정하여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

◆ 상세 내용

1. 정부조달 일반원칙 및 절차

가. 개 요

- 협정 적용대상 조달(covered procurement)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의 사용, 대응구매(offset) 금지 등의 정부조달 일반원칙(제14.3조)이 적용
- 그 외에도 가액산정(제14.1조제5항 및 제6항), 공고의 공표 (제 14.5조), 참가조건(제14.6조), 공급자 등록 및 자격심사(제14.7조), 기간(제14.8조), 예정된 조달에 대한 정보(제14.9조), 제한 입찰(제14.10조), 전자경매(제14.11조), 입찰서 취급 및 낙찰 (제14.12조), 낙찰 후 정보(제14.13조) 및 국내 심의 절차 (제 14.14조) 등의 정부조달 절차 준수 의무 규정
- ※ 한·콜롬비아 FTA 정부조달 챕터의 대부분 절차조항은 개정 GPA 내용과 유사한 수준

나. 협정 적용대상 조달 : 민자사업 포함(제14.1조제2항)

▣ 양국은 민자사업을 적용대상 조달에 포함시켜, 일반 정부조달에 적용되는 절차와 예외, 부속서상 양허기관 및 양허하한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민자사업 개방

※ 민자사업 :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신항만 건설 등이 대표적인 예

※ 국내 민자사업 시장은 현재 국내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1항)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등 모든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개방되어 있음.

협정 적용대상 조달(covered procurement) : 제14.1조제2항

-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속서에 양허된 조달기관(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이,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가 아닌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민자사업계약(BOT) 등의 계약을 통해, 부속서에 양허된 양허하한선(threshold) 이상의 금액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이 장 또는 부속서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입찰 참가조건 (제14.6조)

▣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입찰 참가조건 평가시, 조달 당사국 내에서의 영업활동 뿐 아니라 조달 당사국 밖에서의 영업활동을 기초로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평가

- 조달 참가 또는 계약 낙찰의 조건으로 조달 당사국내에서의 낙찰 실적이나 사전 작업 경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라.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 촉진 (제14.16조)

-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교환 및 중소기업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노력

마. 정부조달 위원회 (제14.18조)

- 협정상 의무 이행 평가 및 기타 양국간 협력 등을 위해 정부조달 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설치

바. 협정적용 예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 등은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WTO GPA 및 기체결 FTA 우리 양허표상의 예외를 유지 (부속서 14A Section A)
- 정부조달의 민감성 및 국가정책 수행 측면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공공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부분은 협정적용의 예외를 인정 (제14.2조)
- 학교급식 예외 조항을 신설,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농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 (부속서 14A Section G)
- WTO 개정 GPA의 우리 양허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급식 예외 규정을 한·콜롬비아 FTA에도 포함

2. 정부조달 시장 개방

■ 우리는 WTO GPA 현행 양허, 콜롬비아는 기체결 FTA(콜-EU-페루 FTA)를 바탕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추가 개방

■ (양허하한선) 중앙행정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는 7만 SDR*로 양허하한선 인하

- 서비스의 경우, 우리가 개정 GPA를 통해 공기업 서비스(40만 SDR)를 양허한 점을 감안, 양허하한선은 40만 SDR로 규정하되 동 조항 발효 시점은 개정 GPA가 발효되는 시점으로 합의

※ SDR : IMF의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의 약어로, 2011-2011년 기준 1SDR = 1,890.16원

■ (상품)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양국 모두 상품 전반을 개방

■ (서비스) 콜롬비아는 콜·미 FTA와 콜·캐나다 FTA보다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Services 및 Printing Service을 추가 개방(콜/페루·EU FTA와 동일)

〈 한·콜롬비아 정부조달 양허 비교(부속서 14A) 〉

(단위 : SDR)

구분			한국	콜롬비아
중앙 정부 기관	양허 기관		중앙행정기관 41개	중앙행정기관 28개
	양허 하한선	상품	7만	7만
		서비스	500만	500만
		건설서비스	500만	500만
지방 정부 기관	양허 기관		지방자치단체 15개	지방행정기관 32개
	양허 하한선	상품	20만	20만
		서비스	1,500만	1,500만
		건설서비스	1,500만	1,500만

구분			한국	콜롬비아
기타 기관 (공기업)	양허 기관		공기업 17개	공기업 8개
	양허 하한선	상품	40만	40만
		서비스	40만 * 개정 GPA가 발효되는 때 양허하한선 적용	40만 * 개정 GPA가 발효되는 때 양허하한선 적용
		건설서비스	1,500만	1,500만
기 타			-	13개 * 정부기관 조달에 적용되는 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3개 기관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과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규정

〈 WTO GPA 및 기체결 FTA, 한·콜롬비아 FTA상 우리 양허하한선 비교 〉

(단위 : SDR)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현행 GPA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개정 GPA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한-칠레	5만	5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싱가포르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한-미	1억원*	1억원*	500만	미양허					
한-EU	현행 GPA와 동일								
한-페루	9만5천	9만5천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페루측 40만***	1,500만
한-콜롬비아	7만	7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 한·미 FTA의 경우, 중앙정부기관 상품·서비스 양허하한선을 미국은 10만 USD, 우리는 1억원(KRW)으로 설정

** 한·페루 FTA의 경우, 협정 발효와 함께 페루는 공기업 서비스를 개방하고 우리측은 WTO GPA 발효시 40만 SDR을 적용

***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개정 GPA가 발효하는 때에 양허하한선(40만 SDR)을 양국에 적용

지식재산권

◆ 개 요

- ▣ 냄새·소리 상표 및 증명표장 제도 규정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제공
- ▣ 지재권 보호와 관련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규정

◆ 상세 내용

1. 상표 (제156조)

- ▣ 냄새 또는 소리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가능 하도록 규정
 - 기업이 사용하고 식별력이 있는 경우 비시각적인 상표도 권리로서 보호 가능

- ※ 소리·냄새 상표를 실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 (예: Intel 효과음/MGM 사자 울음소리(소리상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냄새 상표))

■ 증명표장 제도 규정

-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의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증명 표장제도 도입을 규정

※ 증명표장 :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예: 미국의 Wool Mark, UL(Underwriters Laboratory) 마크, Cotton Mark 등)

※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 국내적으로 기도입

-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인증마크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 유명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된 경우, 동 유명상표의 등록, 유명상표 목록에의 등재, 유명상표로서의 사전 인지(認知) 여부에 관계없이 구제 제공

-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상표권자와 연관성을 나타내고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동 유명상표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 금지

■ 상표등록 거절이유의 서면통지 의무 부여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5.7조)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별됨.
 - 이용통제(use control):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통제
 -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
 - ※ 예: 암호를 넣어 이를 해제하여야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

-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

-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 고의로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저작물, 권리자, 이용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와 관련한 아래 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
-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위성 신호를 불법 해독하는 기기 등을 고의로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배포하는 행위
- 불법 해독된 위성신호를 고의로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3. 국경조치(제15.9조)

-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대해 통관 보류를 요청한 권리자는 권한당국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의무
- 권한당국이 권리자에게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도 부여
- 위조 또는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해 권한당국은 권리자에게 탁송인, 수입업자, 수탁인의 이름·주소, 해당 물품의 수량 등을 통보할 권한 보유
- 권한 당국이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도 국경 조치 가능

4. 기술이전 및 협력 (제15.10조)

-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 교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및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협력 활동 규정

지속가능발전

◇ 개 요

- ▣ 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을 증진하고, 이 목적이 양국의 무역관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 양국은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된 「노동」과, 「환경 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상세 의무를 포함
- ▣ 각국이 관련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인정하고, 양국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기술함.
- 그러면서도 각국이 무역과 투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법상 노동 및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 또는 저하시켜서는 안 됨을 명시
- ▣ 동 챕터는 협정문상 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양국간 대화 및 협의를 통한 원만한 이행을 강조함.

◆ 상세 내용

1. 환 경

가. 일반 원칙 (제16.3조)

- ▣ 생물다양성 및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무역·환경정책을 추구
- ▣ 환경보호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또는 수정하는 각국의 주권적 권리 인정

나. 구체적 약속 (제16.4조)

- ▣ 양국은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이 자국이 가입한 다자간 환경협정(MEA)을 준수하도록 유지
- ▣ 양국간 투자·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유인으로써 환경법상 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환경법 적용 면제·이탈 허용 금지

다. 생물다양성 (제16.5조)

▣ 자국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및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당사국의 권한 인정

▣ 생물다양성 및 전통지식의 중요성, 전통지식에 대한 토착민들의 기여 등을 인정

※ 생물다양성 : 토양·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원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체 및 이들이 속한 복합적 생태계 간 다양성을 의미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 포함) -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기반을 둔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공유 노력

※ 전통지식 : 일반적으로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원주민 또는 공동체에 의해 수대에 걸쳐 소유되고 계승되는 지식을 총칭

※ 유전자원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가운데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물질을 의미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향후 국제법 또는 양측 국내법 발전 동향에 따라 추가 논의

2. 노동

가. 일반 원칙 (제16.6조)

▣ 양국은 '1998년 ILO 선언' 상의 아래 5개 기본 노동권을 국내 법령과 관행에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

- ① 결사의 자유, ②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③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철폐, ④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⑤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나. 구체적 약속 (제16.7조)

- 노동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노동법 및 정책을 채택 또는 수정하는 데 있어 각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노동 법령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
- 양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

3. 공통 규정

가. 절차적 보장 (제16.9조)

-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자에게 행정·준사법·사법 또는 노동 재판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국 노동 및 환경법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고, 아울러 재판소의 절차의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나. 투명성 (제16.10조)

- 비국가 행위자와의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

다.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제16.11조)

- 지속가능발전 챗터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환경 및 노동 담당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설립 및 운영
- 협정 발효일 1년 내에 회의 개최 (그 이후에는 필요시 개최)

협 력

◇ 개 요

- ▣ 경제협력의 목적, 범위, 방법 및 협력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 분야를 세부 조항에 명시

※ 협력 챕터는 특정분야에 대한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이 배제됨.

- ▣ 양국의 11개 관심분야(농업, 어업·양식, 산림, 해상 운송, 정보·통신 기술, 에너지·광물, 중소기업, 산업·상업, 과학·기술, 관광, 문화)에 대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합의하여,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함.

◇ 상세 내용

1. 농업 협력 (제17.3조)

- ▣ 플랜테이션 농작물에 관한 연구, 소규모 농업개발,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교역에 대한 정보 교류 촉진 등을 규정

2. 어업 및 양식 협력 [제17.4조]

- ▣ 어업 및 양식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양국은 연구개발, 정보교환, 인력교류,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협력
- ▣ 수산협력약정을 통해 당사국의 법과 규제에 합치되면서, 양국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 촉진

3. 산림 협력 [제17.5조]

- ▣ 산림자원의 관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제반 협력 사항을 규정
- ▣ 양국은 임산물의 가공, 공급 및 교역, 임업생태 기술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존, 조림 및 목재 가공업에 대한 투자 활동 등에 대해 협력

4. 해운 협력 [제17.6조]

- ▣ 해상운송 및 물류서비스 정보교환, 항만운영·관리·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해운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운 물류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5. 정보통신 기술 (제17.7조)

-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상용화, 국제 시장에서의 영업기회,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제고하는 등 양국간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 발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

6.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제17.8조)

-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활동의 개발 및 촉진을 규정
 - 특히, 양국은 양국간 에너지·광물의 교역 관계의 촉진을 위해 협력
-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입찰, 투자기회, 지질 데이터 정보, 관련 법령 등 에너지·광물 분야 공개 정보의 교환 촉진
- 특히, 양국간 에너지·광물 자원의 수출이나 판매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조치는 상대국에 사전 서면 통지하고, 상대국 요청시 해당 금지 또는 규제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
- 상대국 요청시,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 관련 모든 규정에 대해 정보 제공

7. 중소기업 협력 (제17.9조)

- 양국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 강화
 - 중소기업간 대화, 정보 교환, 교육 프로그램 교환 등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 협력 분야에는 환경 관리, 정보 및 통신 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분야를 포함

8. 관광 협력 (제17.12조)

- 양국은 관광 당국간 협력 강화, 관광 관련 정보교환, 양국간 항공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협력

9. 문화 협력 (제17.13조)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동 협정 체결시 한·콜롬비아 FTA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서는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청각제작물의 콜롬비아 진출 지원에 긍정적 효과 기대

투명성

◇ 개 요

- ▣ 투명성 분야는 우리 국내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위주로 구성
- ▣ 한·미 FTA 내용과 유사하나,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

◇ 상세 내용

-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령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공표 (제18.1조)
-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에 통보 (제18.2조)
 - 모든 조치와 관련, 상대국 요청시 관련 정보 제공
- ▣ 행정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 개시 시에 절차의 성질,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제18.3조)
- ▣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절차 보장 (제18.4조)

협정의 운영

1. 공동위원회

- ▣ 양국 통상장관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설치
-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협정상 권리 및 의무의 개정 여부를 검토
- ▣ 정기회의는 매년 양국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하되, 어느 한 쪽 당사국 요청시 특별회의 개최

2. 위원회 및 작업반

- ▣ 협정의 이행 원활화를 위해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설치
(제19.1조제2항 및 부속서 19-가)
- 위원회 : 상품무역위원회, 관세위원회, SPS위원회, TBT위원회, 통신협력위원회, 정부조달위원회

- 작업반 : 농산물 무역 임시작업반, 일시 입국 작업반
- 회의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쟁해결

◆ 개 요

- ▣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게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공동위원회 개입 → ③ 패널 설치 → ④ 패널보고서 제출 → ⑤ 패널 보고서의 이행 및 보상 → ⑥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
-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가능
- 다만,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FTA와 WTO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
-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패널 설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 ‘부패성 상품’ 등의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불이행시의 보상 및 혜택정지(보복) 절차를 규정
- 서면자료 제출, 심리 절차, 입증책임 등 패널의 세부 절차사항 및 중재패널 구성원의 의무 사항은 부속서(행동규범, 모범절차규칙)에 별도 규정

◆ 상세 내용

1.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

- SPS, 경쟁 및 소비자 정책,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협력 챕터를 제외하고,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의 모든 분쟁에 적용

※ 무역구제 챕터에서 다자긴급수입제한 관련 조치(제7.5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조치(제7.7.2조 및 제7.8조)도 분쟁해결 챕터 적용 배제

2.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20.3조)

- 한·콜롬비아 FTA와 WTO협정 또는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여타 무역협정에 동시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국은 양 협정의 분쟁해결절차 중 선택 가능

- 일단 상기 협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패널설치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분쟁해결절차 완료 전까지는 다른 분쟁해결절차 이용 불가

3. 당사국 간 협의 (제20.4조)

- 제소국의 협의 요청시, 요청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에 협의 개최

4. 공동위원회 개입 (제20.5조)

- 협의를 통해 분쟁 미해결시, 제소국은 한·콜롬비아 FTA 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의 개입 요청 가능
- 공동위원회는 요청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개최

5.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제20.6조)

-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취할 수 있음.

6. 패널 절차 (제20.7조~제20.8조)

- 협의 및 공동위원회 절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분쟁 미해결시에는, 제소국은 패널 설치 요청 가능

■ 패널은 패널 구성 이후 90일 이내에 패널보고서 제출

패널 구성

- 패널은 3인의 패널리스트로 구성
- 3인 중 2인은 각 당사국인 1인씩 지명하고, 패널 의장인 나머지 1인은 양 당사국이 합의
- 양 당사국이 미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4인의 예비명단을 제출하고, 패널 의장은 그 2부의 예비명단(8인)에서 추첨으로 선정

긴급 사안(urgent matters)에 대한 분쟁해결기간 단축

- 부패성 상품을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 공동위원회 개입 요청 시한 : 협의요청 접수 이후 60일 → 20일
 - 패널 설치 요청 시한 : 협의개시 이후 45일 → 20일

7. 패널보고서의 이행 제20.10조

■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에 합의

-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한 경우, 해당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

8. 불이행 및 혜택의 정지 (제20.11조)

- 패널보고서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국은 제소국과 보상 협상 개시
- 제소국은 아래 사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 협정에 의해 피소국에 부여된 혜택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통보 15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 가능
 - 보상 협의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미합의
 -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피소국이 이를 미이행
- 피소국은 제소국이 정지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심패널 재소집 가능
 - 패널이 피소국이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정하지 않는 한, 제소국은 패널이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의 혜택 정지 가능

9. 이행 검토 (제20.12조)

- 피소국은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에 서면통보하여 그 사안을 패널에 회부 가능
 - 패널은 피소국의 서면통보 후 6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 패널이 피소국이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국은 정지했던 혜택 복원

예 외

1. 일반적 예외 (제21.1조)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상 예외 사유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GATS 제14조상 예외 사유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2. 안보 예외 (제21.2조)

▣ 공개시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비공개 또는 접근 제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 평화 및 안보 관련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

3. 조세 예외 (제21.3조)

- ▣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조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
 -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민대우 조항은 일정 조건하에서 조세조치에 적용하고,
 - 투자와 관련한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적용
- ※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주 3에서 규정. 수용 관련 상세 내용은 투자 분야 참조

최종조항

-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제22.1조)

- 협정 개정 (제22.2조 및 제22.3조)
 - 양국은 협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양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 WTO협정 개정시, 이 협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

- 협정 발효 (제22.4조)
 -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접수 30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

- 협정 종료 (제22.5조)
 - 상대국에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후 협정 종료

■ 잠정적용 (제22.6조)

-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절차완료를 통보하였으나 콜롬비아가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잠정적용을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 날부터 잠정적용 가능
 - ※ 협정의 잠정적용은 정식 발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한-EFTA FTA(제10.6조제5항) 및 한-EU FTA(제15.10조제2항)에서도 규정
 - ※ 콜롬비아는 국내법에 따라 의회 비준이후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여야 조약의 발효가 가능하며, 통상 조약 서명후 2년 가량의 기간 소요

■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 협정문이 모두 동등한 정본 (제22.7조)

- 단, 불일치시 영어본이 우선

한 · 콜롬비아 FTA 상세설명자료

2012년 12월 인쇄 & 발행

발 행 | 외교통상부 FTA 상품과
Tel.(02)2100-0870

인 쇄 | 애드컴서울
Tel.(02)2285-6601

